알아봅시다

양돈관련 융자금 신청요령 및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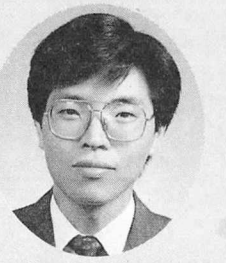

어 인 철 대리
(축협중앙회 여신관리부)

정부는 농림수산사업 시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따른 원활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농림수산사업 추진체계와 정책자금 대출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 시행한 바 있다.

다음은 개정된 농림수산사업 추진체계와 정책자금 대출제도 개선 내용을 중심으로 양돈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융자사업의 종류와 융자금 지원절차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다.

1. 양돈관련 융자사업의 종류

'94. 12월 농림수산부 훈령으로 제정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따른 양돈관련 융자사업의 종류와 융자조건은 〈표 1〉과 같다.

2. 사업참여 신청

양돈농가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서 제시한 사업에 참여하여 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사전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1) 무슨 사업을 얼마만큼의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가?

(2) 융자시 담보문제와 자체부담금(일반적으로 사업소요자금의 30% 이상) 조달 능력은?

(3) 사업시행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인가?

(4) 사업신청에서부터 사업시행까지의 소요기간은?

(5) 사업이 잘못될 경우의 예상되는 책임과 기타 고려할 사항

사업참여 신청서는 해당 시·군청 산업과나 읍·면·동 사무소, 농어민후계자의 경우는 농촌지도소에 제출하며, 신청시기는 연중 가능하나 최소한 사

〈표 1〉 양돈관련 융자사업의 종류 및 융자조건(농어민 자율추진사업 중심)

사 업 명	융 자 한 도	융 자 조 건	
		기 간 (거치/상환)	금 리 (년)
돼지경쟁력제고사업	◦농가 호당 2억원 이내 ◦법인 : 자본금의 200% 이내	5/10년	5%
축산단지조성사업	◦1인당 3억원이내 ◦법인 : 자본금이 200% 이내	5/10년	5%
가축분뇨처리시설	◦시설별로 차등지원	3/ 7년	3%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1인당 15백만원부터 30백만원까지	5/ 5년	5%

주) 돼지경쟁력 제고 및 축산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기계, 기구 및 창비 등은 2년거치 3년 상환

〈표 2〉 농림수산정책사업의 추진단계별 일정

추 진 절 차	일 정	비 고
◦무융자사업 신청요령 공고	전전년 12월중	
◦사업참여신청	전년 1. 15까지	
◦예산신청 및 편성 (시·군→시·도→중앙)	전년 10. 15까지	
◦시·군 대상자 확정	당년 1. 20까지	

주) '96년도 사업신청은 '95. 2. 28까지 마감되었음.

〈표 3〉 융자관련 기본준비 서류

구 분	기 본 서 류	개인(양축가)		법 인	
		신용	담보	신용	담보
융자신청시	◦융자상담 및 신청서(소정서식)	○	○	○	○
	◦총회 또는 이사회 차입결의서			○	○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증명서			○	○
신용조사서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
	◦최근 2기간 결산재무제표			○	○
	◦최근 월말 합계잔액시산표			○	○
담보물 감정시	◦담보물건(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		○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		○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환지(예정) 증명서		○		○
융자실행시	◦주민등록사본	○	○		
	◦인감증명서		○	○	○
	◦등기권리증		○		○
연대보증인	◦재산세 납부영수증 또는 납세필증사본 등	○		○	

업시행년도 전년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정부의 예산에 반영되어 계획한 사업시행년도에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서 정형화한 농림수산정책사업의 추진절차별 일정은 〈표 2〉와 같다.

3. 융자신청 및 준비서류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장·군수는 이를 공고하게 되며, 사업대상자는 융자취급기관의 자금배정 유무를 확인한 후 사업시행년도 내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융자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또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이냐에 따라 종류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서류는 〈표 3〉과 같다.

4. 융자결정 및 대출종류

일반적으로 정책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융자취급기관의

> 농림수산 정책자금의 경우 무보증신용대출의 1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1천만원 이내이며, 보증신용대출은 무보증신용대출을 포함하여 2천만원 이내이다.
>
> 이때 연대보증인의 자격기준은 대개 재산세납부액이나 조합원의 경우에는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연체대출 보유유무나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 등록 여부를 제외하고는 융자결정에 특별히 제한을 두는 사항은 없다. 다만, 사업대상자가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와 신용도에 따라 배정된 융자한도 범위내에서 대출금액이 결정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용대출

신용대출은 일반적으로 연대보증인이라는 인적담보를 근거로 대출을 실행하는 보증신용대출을 칭하고 있으나, 근래에 들어 대출제도가 발달하고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연대보증인 입보없이 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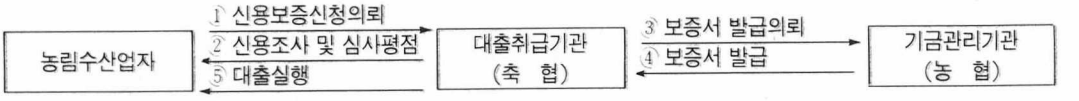

〈그림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취급절차

자신청인 본인의 신용만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무보증신용대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무보증신용대출은 융자취급기관의 위험부담이 타 대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액, 단기자금(축협의 경우 양축자금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농림수산 정책자금의 경우 무보증신용대출의 1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1천만원 이내이며, 보증신용대출은 무보증신용대출을 포함하여 2천만원 이내이다.

이때 연대보증인의 자격기준은 대개 재산세납부액이나 조합원의 경우에는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2) 부동산담보대출

가장 보편화 되어 있는 대출제도로서 대표적인 부동산의 종류로는 대지, 주택, 전·답 등이 있다. 이들 부동산은 선취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지원된 융자금을 투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을 완공 즉시 담보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도 있는데 이를 후취담보대출이라 한다.

금차 개정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제도 개선사항중 후취담보대출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후취담보대출시 사업대상자가 구비할 요건

첫째, 시설물은 등기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시설물이 늘어서는 당해 토지는 반드시 선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셋째, 본인의 제공가능한 담보(주택, 기타 토지) 물건을 기제공(선취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 대출을 받고서도 담보가 부족한 때

②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 대출을 실행할 경우의 대출비율 적용기준(〈표 4〉 참조)

〈표 4〉 대출 비율 적용 기준

구 분		적 용 기 준
갑 류	부지 및 주택, 건물류	투자금액의 81%~90%
을 류	가공공장류, 기계, 창고류	투자금액의 91%~90%
병 류	축사류	투자금액의 81%~90%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부 대출

농어민의 담보력 보완 및 대출편의를 위하여 가장 중점을 둔 정책자금 대출제도개선 사항 중의 하나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이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무대출이란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를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대출하는 제도이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취급절차는 〈그림 1〉과 같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의 보증한도는 신용조사 및 심사평점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개인은 최고 2억원 이내, 영농조합법인 등은 5억원까지 발급이 가능하며 정책사업 대상자는 심사평점에 우대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신용상태가 양호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한도외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